

고의적으로 가해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법적 책임

드레첼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 (1985년 봄호)에 실린 Robef E.Drechsel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신문발송학과 교수)의 「Mass Media liability for Intentionally Inflicted Emotional Distress」를 번역한 것이다. 펠펠 편집자주

50여년전, 대부분의 미국 법원들은 정신적 피해를 야기 시킨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인정치 아니하였다. 심지어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법원은 보상을 명하지 않았다. 흔히 인용되는 뉴욕 판례에서처럼 「그 결과가 신경성 질환, 실명, 정신이상, 또는 심지어 유산일지라도 이 법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주정부는 고의적으로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1978년 이후부터는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한 소송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의적으로 야기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비교적 새로운 소송이 피고인 매스 미디어에 가져다 주는 제반 관련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Restatement of Law 지 최근호에서는 책임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극단적이거나 난폭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그 정신적 피해와 아울러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측 행위가 극단적이고

난폭했다는 사실, 피고측의 고의 또는 경솔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만 한다.

Restatement 지의 주장을 인용하면 행위가 「난폭하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잔악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문명사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극단적인 행위를 뜻한다. 정신적 피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참을 수 없을 것이라 인정되는 정도」이면 충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피해로는 놀람, 공포, 슬픔, 수치심, 굴욕감, 민망함, 분노, 걱정, 실망, 근심, 모욕감 등이 있다. 매스 미디어가 관련된 고의적 가해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은 몇 가지 면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와 비슷하나 그 어느 것보다도 범위가 넓다.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소송은 모두 정신적 안정이 그 중심사안이 되지만, 고의적으로 입힌 피해의 대상은 명성, 사생활의 침해에 의해 일어나는 행위들을 포괄한다. 이것들에는 진실 또는 허위내용의 출판, 그리고 출판자체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의 방법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윤리적 논의의 대상만 될 뿐 법적인 문제로는 되지 못했던 행위까지도 대상이 된다.

오늘날까지 미디어를 상대로 한 고의적 가해에 대한 소송을 연구한 사람은 별로 없다. 스티븐씨는 법원이 앞으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를 당한 원고들이 주장할 정신적 피해의 인정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고 미디어에 대해서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가해행위에 대해 조심할 것을 경고하였다. Mead 는 미디어의 고의적 가해에 관련된 소송들을 분석하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와 미디어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1977 년에서 1981 년 사이에 제기된 487 건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고의적 가해 등에 관한 소송들을 분석한 후 고의적 가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 비해 아직까지는 드물기는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는 고의적 가해에 대한 소송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이 점점 유행하고 있으며 또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Mead 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계량분석이었다. 이 글이 추구하는 것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즉, 미디어의 고의적 가해에 대한 소송에서 누가 승소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소송을 야기시키는 미디어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은 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연구방법

미디어가 고의적 가해로 인해 피소된 모든 판례(언론인 개인이 피소된 경우와 고용주가 피소된 경우 포함)를 살펴보기 위해 American Digest System(West 출판사가 미국내의 모든 판례를 요약하여 항목별로 묶은 책)과 Media Law Reporter 지를 이용하였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 의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청구는 특별히 제외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 가해는 개별적인 행위로서 주장되어야 하며 보상청구는 그것에 직접 간접으로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판관할권이라든지 법령적용문제 등 단지 기술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소송들 역시 제외시켰다. 또한 매스 미디어가 유포한내용에 의해 미디어 비 종사자가 제소를 당했을 경우도 역시 다루지 않았다.

조사결과

필자는 1984년 후반 현재까지 34건의 사례를 찾아낼 수 있었으나, 1978년 이후 판결에 까지 이른 것은 그 중 6건에 불과하였다. 이들 소송들은 14개 주에서 발생되었다. 5개 소송이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1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를 하였으며, 보상금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였다. 원고패소판결과 원고 승소판결 중 2건에 있어서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측이 모두 승소하였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세 번째 소송에서는 피고가 항소를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배상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번째 소송에서는 항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피고들은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 더욱 성공적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들의 이의신청은 22번이나 받아들여져 즉결심판이나 기각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단 1건만이 1심에서 결과가 반복되었을 뿐이다. 반대로 6건의 재판 전 해결노력은 실패로 끝났는데 이때 피고가 1심에서 이긴 경우는 1건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 측인 미디어가 1심 패소에 불복 항소하여 진 경우는 단 1건뿐이었다.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즉결심판에서 기각을 얻는 일, 승소, 그리고 패소판결의 반복 등을 모두 피고 측의 법적 승리로 본다면, 고의적으로 가해한 피고들이 승리할 확률은 거의 3/4에 이르게 된다. 이 불법행위의 광범위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의적 가해에 대한 소송은 부당한 내용의 출판과 그 정보가 수집된 경로 등 두 가지 모두에 근거를 두어 왔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가해가압도적 (34건 중 32건)으로 많았다. 소송의 1/4은 사진의 부당한 사용에 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언어에 의해 야기된 것이었다.

2건만을 제외한 모든 고의적 가해에 대한 소송들은 다른 불법행위와 함께 제기되었는데 가장 흔한 것들이 명예훼손과 사생활권의 침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들을 야기 시키는 미디어의 행위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고의적 가해에 대한 주장이 실제로는 명예훼손이나 사 생활권 침해에 대한 주장인 경우들을 제외해 보면 순수한 고의적 가해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 행위는 4가지로 분류된다.

그 첫 번째는 사려, 품위, 감각의 결핍으로 인하여 내용이 부당한 것을 출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질로 잡혀있던 여인이 아파트에서 타올만으로 몸을 가린 채 구출되어 나오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였을 때, 그리고 강간사건의 재판을 보도하던 TV 방송국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검찰 측 보장을 조건으로 증언하던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했을 때 소송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는, 해당되는 개인들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넓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솔하거나 무감각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사는 병원의 응급실 시설에 관한 기사에서, 원고측 아내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병원 측의 노력을 기사화 했다. 물론 그 신문사는 그녀의 이름을 가명으로 보도했으나 원고측에 의해 제소를 당했다. 또 어느 신문사는 원고의 남편과 한 여인이 죽은 화재사건에 대한 일상적인 보도의 결과로 제소를 당하였다.

세 번째는, 원고를 제삼자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가해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에 해당되는 원고 중에는 『네 적을 알라』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실린 마약비밀 단속반원과 용의자가 잡히기 전에 신원이 발표되어 버린 살인강도 사건의 증인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의 나체사진과 함께 이름이 보도되어 수많은 혐오스러운 전화를 끊이게 된 여인도 있었다.

네 번째 범주에는 무해한 오보이면서 원고측의 특별한 관심이 되는 기사가 포함된다. 살인혐의로 재판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미결수는 그의 석방을 의미하는 대법원 판결을 전망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기쁨에 들떴었으나, 결과는 그 기사의 추측과는 정반대였다. 망연자실의 상태에 빠질 만큼 실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결수는 신문사를 고의적 가해자로 제소하였다. 고의적 가해의 소송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난폭성」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 요건을 원고측이 넘기 어려운 장애요소로 이용했다. 살인강도의 목격자, 신원이 공개되어 버린 마약단속반원, 냉장고 안에서 질식사 한 아이들의 사진이 게재된 것에 대하여 제소한 부모 중 그 어느 누구도 「난폭성」을 입증할 수가 없었다. 이 요건 충족의 실패가 피고측 승소의 60%에 직접적 이유가 되었다. 반면에 「난폭성」에 대한 추상성은 배심원과 판사들에게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신문사가 거리를 걷는 원고 여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녀를 매춘과 연관시켰다고 주장한 소송(이때 신문사는 그녀의 신원을 감추었다고 주장)이나, 피고가 미 육군의 허가를 얻어 입수 발표한 원고의 전쟁포로로서의 부끄러운 사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즉결재판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정헌법 (The First Amendment)도 고의적 가해에 대한 재판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10 여 개의 고의적 가해를 원인으로 한 재판에서 수정헌법이 지니는 뜻이 언급되었으나, 그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경우는 3 건뿐이었다. 이 3 건은 모두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의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 미국대법원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진실된 공식 법원기록」의 출판을 주정부가 금지 하는 것은 수정 헌법 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3 건의 고의적 가해소송들은 모두공개법정에서의 재판진행에 대한 보도에 관한 것들이었다 (2 건은 강간사건재판에서의 피해자공개였으며, 1 건은 파면에대한 청문회였다.)

법원은 위 재판절차의 정확한 기록은 Cox Broadcasting 판례에 의해 보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번째 경우에는 법원은 수정헌법에 의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다른 소송은 출판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에 비해, 그 소송은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사에 의한 연어도단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관습법이 충분하였다. 법원은 위 재판절차의 정확한 기록은 Cox Broadcasting 판례에 의해 보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번째 경우에는 법원은 수정헌법에 의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다른 소송은 출판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에 비해, 그 소송은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사에 의한 연어도단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관습법이 충분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에 대한 고의적 가해소송에 관련된 법들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현재까지의 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은 보편화되리라고 여겨진다.

첫째, 관습법이 원고측이 고의적 가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는 있지만 피소된 미디어가 재판에까지 이르는 것은 위험하다. 비록 피고측이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무척 높기는 하지만 그러한 승소의 결과가 법정에서는 것을 피하는 편보다 그 희생은 더 크다. 그러한 편에서 고의적 가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피고는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피고와 법적 상황이 비슷하다. 사실 고의적 가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보상 받기 원하면서 고의적 가해를 부수적으로 (아마도 그 넓은 범위와 배심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이유로) 이용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두 번째로, 고의적 가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방어책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고의적 가해,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권의 침해 사이의 법적인 연관성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수정헌법을 방어책으로 쓰는 방법은 Cox Broadcasting 의 판례가 적용되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물론 피고인 미디어들은 대부분의 법원들이 헌법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에 고무될 수는 있겠지만)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보여진다.

그러나 피고인 미디어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과거에는 언론윤리에 일임되어 왔던 행위들에 대해 점점 많은 수의 소송인들이 배상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의적 가해를 책임의 독립적인 이론으로 본다는 관점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소송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원고는 그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극히 지나쳤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승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언론인들은 법원이 윤리적 문제에 법의 제재(legal teeth)를 가할 경우 미디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다. 개인적 불행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정보원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협박하는 행위, 인질을 위태롭게 할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또는 익명성을 보장하고는 정보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 앞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명코, 고의적 가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 중 일부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이나 일부는 소송의 가치도 없는 것도 있다. 패소는 물론 승소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은 막대하다.